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관련 개정사항 안내 협조 요청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으로 당연가입 되도록 변경('19.7.16. 시행) 되었습니다.
2.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장 변경 기간(최대 4개월)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으로 당연적용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교육·각종 상담 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내하거나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공단(☎1577-1000, 033-811-200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관련 개정사항 안내 1부.
2.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리플렛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지역협력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지역협력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시청장(지역협력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시청장(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시청장(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협력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시청장(지역협력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지역협력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지역협력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외국인력국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외국인력상담센터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대한건설협회장

행정사무관 최난주 과장 전결 2019. 6. 28.
니예순

협조자

시행 외국인력담당관-1911 (2019.06.28) 접수

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4층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152 팩스번호 044-202-8027 / eastsun00@korea.kr / 대국민 공개

"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관련 개정사항 안내

1 직장 가입 (변동사항 없음)

-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이 당연적용

*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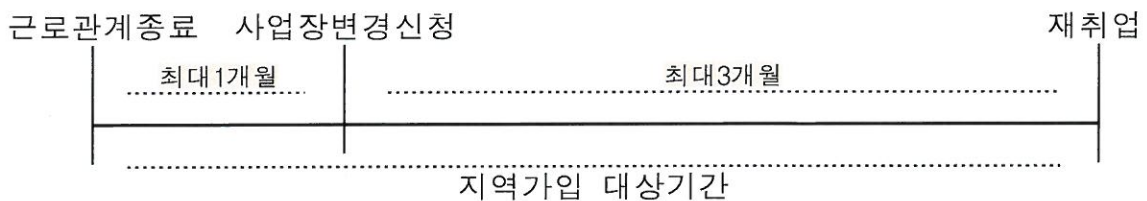
2 지역 가입 ('19.1.15. 법률 개정 → '19.7.16. 시행)

<1> 지역가입자 당연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 (기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지역가입 임의 적용 → (개정) 지역가입 당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개정(당연적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미납 시 자격 상실 규정 삭제(미납 시 급여정지 및 체납절차)

-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은 근로관계 종료 시부터 재취업까지 최대 4개월간 체류가 허용되며 이 기간이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기간



-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직전연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19년은 11만원 수준) 적용

- 다만,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실직 시(2개월 이내 신청)에도 36개월까지 직장가입 보험료 적용 받을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가능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제출 시 지역가입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낮은 직장가입자 당시 보험료 적용

<2> 지역가입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제재(「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

- (기존) 지역가입자는 내·외국인 모두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급여 제한 → (개정) 지역가입 외국인은 최초 체납 시 급여 제한

* 외국인이 보험료 체납 중에도 급여혜택을 받은 후 출국해버리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 급여제한과 별도로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 징수(1천500분의 1) 및 체납처분 진행

2019년 7월 16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건강한 삶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입국 즉시 가입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가입처리
- 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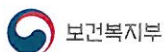
보험료 및 보험급여

- (보험료) 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 산정
(2019년도 기준 113,050원 이상)
- 세대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단 관할 지사 방문하여 세대합가 신청 필요
- ☞ 세대합가 기준(동일한 체류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
- (보험급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음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신청시 체류허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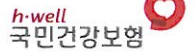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문의 / 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From July 16, 2019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 who have stayed more than 6 months in Korea should be en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andatori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here to safeguard your healthy life.



Eligibility

-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 who have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six months
- Foreigners who are visa holders of study(D-2) or marriage(F-6) are entitled to enroll as a date of entry into Korea.



Procedure to enrollment

- One can subscribe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ithout any reporting procedure
- If you do not receive any information sheet on how to register to the NHIS or an insurance contribution bill to pay, please visit a nearby NHIS Branch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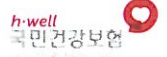
Insurance contribution and benefits

- (Insurance contribution) Each household's insurance contribution is calculated based on income and property of its household members (The average of each household's contribution is over KRW 113,050 as of 2019)
 - If you wish to pay the insurance contribution as a family unit, visit a branch office of the service and ask to add your family members under your name (or the name of householder)
 - Criteria for combining into one household are as follows
 - ① The residential addresses of family members are to be same
 - ② The scope of family members is a spouse and minor children (aged under 19)
- (Insurance benefits) Same benefits as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strictions on health insurance benefits in case of delaying payment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

- Your health insurance benefits would be restricted when visiting hospitals and clinics
- Your residence permit would not be granted when requesting for a visa extension at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quiry / consultation (Weekdays from 9:00 am to 6:00 pm)

☎ 1577-1000 (Press 7 for service in foreign languages)

☎ 033-811-2000 Consultation in foreign languages (English, Chinese, Vietnamese) is possible.